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하 천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2항 관련) [안 별표 3의2]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1만세제곱미터당 63.3원)와 동일하게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제3호의 본문 중 “발전용수”를 “발전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의2>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 제3항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m³) 3.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m³) 4.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별표 3의2>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 제3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발전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m³)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연 락 처	(044) 201 - 7640